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 및 청산업무 분리 〉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38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0. 1.
3. 회 부 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자율규제로서 시장 감시, 이상거래 심리 및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거래소의 청산 및 결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시장감시업무와 청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의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 역시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Ⅲ. 주요내용

가. 시장감시법인의 신설

- 1) 시장감시법인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 2)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규정과 지정거래소의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 대한 시장감시 규정을 삭제함(안 제78조제4항 및 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 삭제 등).
- 3)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하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2 및 제414조의3 신설).
- 4)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와 감시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제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14조의7 및 제414조의12 신설).
- 5)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하며, 임원은 회원 총회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414조의10 신설).
- 6)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을 정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414조의11, 제414조의13 및 제414조의17 신설).
- 7) 금융위원회의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14조의16 및 제414조의18 신설).

나. 거래소 및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를 삭제함(안 제377조, 제378조제 1항 삭제).

IV. 검토의견

가. 시장감시법인의 신설

□ 개정안은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6항 및 제7편의2 신설, 제78조제4항 및 제402조부터 제405조까지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조의2(금융투자상품시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이 법에서 “시장감시법인”이란 금융투자상품시장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14조의3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감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별)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다자간매매체결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에 참가하는 자(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거래참가자”라 한다)에 관한 사항 2. ~ 8. (생략) ② (생략) ③ <u>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u>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별) ① ----- ----- ----- ----- 1. ----- ----- <u>이하 “거래참가자”라 한다</u> ----- ----- 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감시법인</u> 은-----

현행	개정안
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⑤ ~ ⑧ (생략)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 4. (생략)	----- ----- -----. 1. ~ 4. (현행과 같음) <삭제>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5. 정관,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이하 이 호 및 제373조의7에서 “정관등”이라 한다)이 법령에 적합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충분할 것 6. ~ 9. (생략) ③ (생략)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이 법 또는 정관등에 따라 거래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공정하게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1. (생략) 2.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3. (생략) 제376조(정관)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생략)	5. ----- ----- --공시규정----- ----- ----- ----- ----- ----- ----- ----- 6.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373조의7(상장 등의 책무) ----- ----- ----- -----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제376조(정관) ① ----- ----- -. 1. ~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생략)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1. ~ 7. (생략)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9. (생략)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11. ~ 13. (생략) ② (생략) 제380조(임원)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2. (생략)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 ⑥ (생략)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7조(업무) ① ----- ----- -----, -----제4호----- ----- -----결제기관----- -----. 1. ~ 7. (생략) <삭제> 9. (현행과 같음) <삭제> 11. ~ 1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제380조(임원)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13인-----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① (현

현행	개정안
략)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조제8호, 제387조, 제389조, 제394조, 제395조, 제396조제2항, 제397조부터 제400조까지, 제404조 및 제426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행과 같음) ② ----- ----- ----- ----- ----제400조까지 및----- ----- -----.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감시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감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위원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이 경우 해임 요구된 시장감시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거래소는 2개월 이내에 시장감시위원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u> <u>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준용한다.</u> <u>⑦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⑧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u> <u>1. 제7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u> <u>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u>⑨ 그 밖에 시장감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u>제403조(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위원회는 제40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삭 제>

현행	개정안
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거래소는 회원관리규정·증권시장업무규정·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상장규정·공시규정·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삭 제>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① ----- ----- -----공시 규정----- ----- ----- ---

현행	개정안
한다.	<u>제7편의2 시장감시법인</u>
<u><신 설></u>	<u>제1장 총칙</u>
<u><신 설></u>	<u>제414조의2(설립) ①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u>
<u><신 설></u>	<u>② 시장감시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
<u><신 설></u>	<u>제414조의3(인가) ① 제414조의7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u>
	<u>1.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u>
	<u>2. 정관,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u>
	<u>3.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u>
	<u>4.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u>
	<u>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14조의4(인가요건의 유지)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u>

현행	개정안
	<u>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414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시장 감시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시장감시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 설></u>	<u>제414조의6(준용규정) ① 시장감시법인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u>② 시장감시법인의 인가에 관하여 제 323조의4 및 제323조의5를 준용한다.</u>
<u><신 설></u>	<u>제2장 업무 및 조직 등</u>
<u><신 설></u>	<u>제414조의7(업무) ① 시장감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u> <u>1. 시장감시,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 체결회사(이하 “거래소등”이라 한다)에서 이루어지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거래소의 회원과 거래참가자(이하 “거래참가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리</u> <u>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 체결회사 사이의 연계감시를 포함한다)</u>

현행	개정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거래참가자등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거래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6. 제414조의11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14조의1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시장감시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 각 호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14조의8(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법인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거래소 2.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제414조의9(정관) ① 시장감시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신설>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u>하여야 한다.</u> 1. <u>목적</u> 2. <u>명칭</u> 3. <u>사무소에 관한 사항</u> 4. <u>회원</u>에 관한 사항 5. <u>경비의 분담</u>에 관한 사항 6. <u>임원</u>에 관한 사항 7. <u>업무와 그 집행</u>에 관한 사항 8. <u>이사회</u>에 관한 사항 9. <u>회계</u>에 관한 사항 10. <u>공고의 방법</u>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u>시장감시법인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제414조의10(임원 등) ① <u>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감사 및 이사로 한다.</u> ② <u>시장감시법인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독립이사(거래소등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아닌 자로서 선임된 이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3인 이상으로서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u>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은 회원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시장감시법인의 건</u>

현행	개정안
	<u>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이사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고, 독립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기관이 추천한 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 <u>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u> ⑤ <u>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시장감시법인의 이사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 요구된 이사장의 직무는 정지되며, 시장감시법인은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u> ⑥ <u>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u> ⑦ <u>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u> <u>1.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경우</u> <u>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u>

현행	개정안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⑧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의 구성, 선임 방법·절차 및 시장감시법인의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제414조의11(시장감시규정)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에 부수하는 사항이 포함된 시장감시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제414조의12(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시장감시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등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등이 거래소등의 업무 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거래참가자등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현행	개정안
<신 설>	②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참가자등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거래소등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감시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 또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제1항에 따른 감리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거래참가자등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제한할 수 있고, 거래소등에 대하여 거래참가자등의 자격을 정지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8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거래참가자등으로 보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 제414조의13(분쟁의 자율조정) ① 시장감시법인은 제414조의7제5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시장감시법인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③ 시장감시법인은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14조의14(정보이용금지 등) ①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감시법인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③ 제63조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직원
<u><신 설></u>	제414조의15(거래소 업무관련 규정 등에 대한 협의) 거래소등은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감시법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3장 감독 등 제414조의16(시장감시법인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현행	개정안
	<u>414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u> 2. <u>인가조건을 위반한 경우</u> 3. <u>제414조의4에 따른 인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u> 4. <u>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u> 5. <u>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6. <u>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7.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8. <u>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 ② <u>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1. <u>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u> 2. <u>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u> 3. <u>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u>

현행	개정안
	<u>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u> <u>4. 기관경고</u> <u>5. 기관주의</u> <u>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③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u> <u>1. 해임요구</u> <u>2.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u> <u>3. 문책경고</u> <u>4. 주의적 경고</u> <u>5. 주의</u> <u>6.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④ 금융위원회는 시장감시법인의 직원이 제1항 각 호(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4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장감시법인에 요구할 수 있다.</u> <u>1. 면직</u> <u>2. 6개월 이내의 정직</u> <u>3. 감봉</u>

현행	개정안
	4. 견책 5. 경고 6. 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시장감시법인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 제422조제3항, 제424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425조를 준용한다.
<신설>	제414조의17(시장감시법인 규정의 승인) 시장감시법인은 시장감시규정, 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제414조의18(준용규정) 시장감시법인의 보고와 검사에 관하여 제410조를 준용한다.
제423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23조(청문)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신설>	7의2. 제414조의16제1항에 따른 인가의 취소
<신설>	7의3. 제414조의16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시장감시법인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또는 면직요구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생략)	제426조(보고 및 조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u>금융투자업 관계기관</u> 또는 <u>거래소</u> 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 ----- <u>금융투자업</u> <u>관계기관, 거래소 또는 시장감시법인</u>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u>거래소</u> 는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u>시장감시법인</u> ----- ----- ----- ----- -----.
⑦ · ⑧ (생략)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u>거래소</u> ,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 ----- ----- <u>거래소, 시장</u> <u>감시법인</u>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4조(벌칙) ----- ----- -----.
1. ~ 27의2. (생략)	1. ~ 27의2. (현행과 같음)
<신설>	27의3. <u>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u>

현행	개정안
28. · 29. (생략)	로 제414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 · 29. (현행과 같음)
1. ~ 11. (생략)	제445조(벌칙) ----- ----- -----.
12. 제63조제1항제1호(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제335조의14,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1. ~ 11. (현행과 같음)
13. ~ 35. (생략)	12. ----- -----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 ----- ----- -----
36. 제301조제5항, 제323조의9제3항, 제327조제3항 또는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13. ~ 35. (현행과 같음)
37. ~ 44. (생략)	36. ----- 제327조제3항, 제383조제2항(제78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14조의14제2항을 ----- ----- -----
<신설>	37. ~ 44. (현행과 같음)
45. ~ 48. (생략)	44의2. 제414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자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	45. ~ 48.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현행	개정안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3. (생략)	1. ~ 43. (현행과 같음)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44. ----- -----제335조의7, 제379조 또는 제414조의5----- -----
44의2. ~ 49. (생략)	44의2. ~ 49. (현행과 같음)
② 제63조제1항(제289조, 제304조, 제328조, 제367조,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제383조제3항, 제414조의14제1항 또는 제441조----- ----- ----- -----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에 대한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거래참가자 등에 대한 감리, 분쟁조정업무(이하 “시장감시업무”)를 각각 거래소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거래소”)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두어 거래소시장과 ATS 모두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현행법 제377조¹⁾는 거래소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감시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 제78조²⁾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지정 거래소”)가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이하 “ATS”)에 대해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ATS에 대한 시장감시업무 수행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³⁾

○ 한편, 현행법 제402조⁴⁾는 거래소와 ATS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10. 거래소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조정(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③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이하 이 조, 제402조 및 제404조에서 “지정거래소”라 한다)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시할 수 있다.

1.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나 거래참가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제출하는 호가의 상황
2. 매매체결대상상품에 관련된 풍문·제보나 보도
3. 매매체결대상상품의 발행인 등에 관한 신고 또는 공시
4. 그 밖에 매매체결대상상품의 가격 형성이나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또는 요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지정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참가자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거래참가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매매체결대상상품의 종목 또는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거래참가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 본인가, 3월 4일 대체거래소(ATS) 출범 예정”, 2025. 2.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수행하기 위하여 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직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동 위원회는 시장감시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의 위원⁵⁾과 예하 심의·자문기구(규율위원회, 분쟁조정심의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기구로 시장감시본부를 운영하고 있음.

○ 시장감시위원회는 시장감시업무 등의 자율규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거래소 이사회와 별도의 기구로 설치되었음.

[그림1] 시장감시위원회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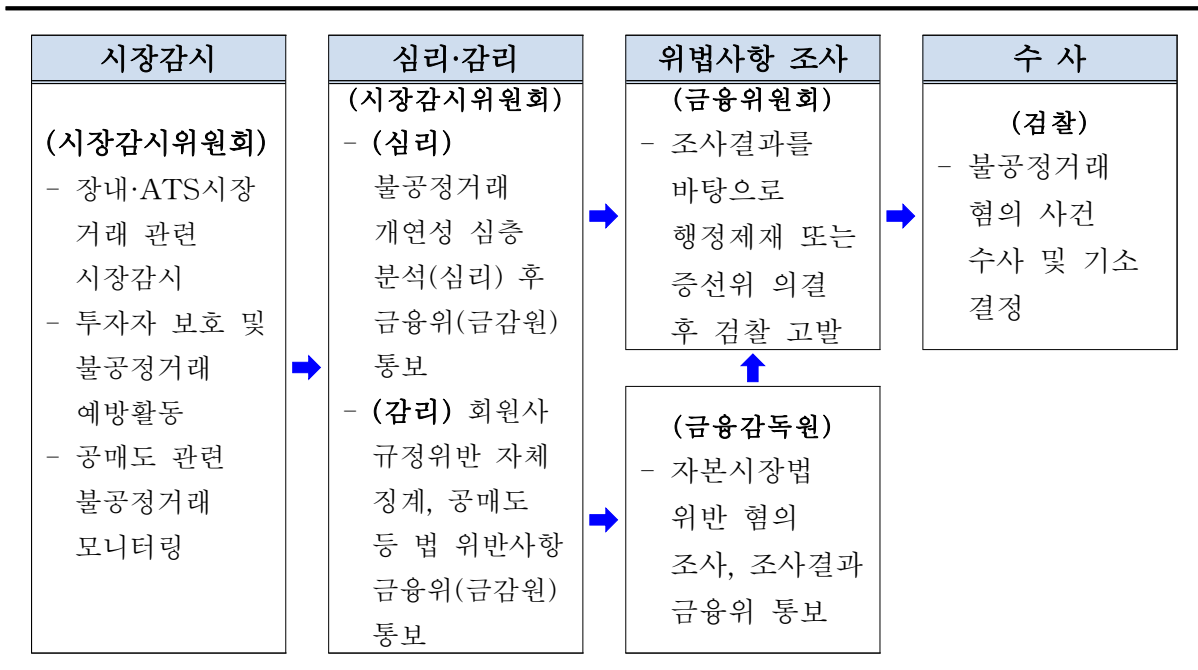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2. 증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사이의 연계감시(지정거래소가 제40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하는 거래소시장과 다른 거래소시장 사이 및 거래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의 연계 감시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연계감시의 결과에 따른 회원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징계 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결정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5.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에 관한 업무
 6. 제403조에 따른 시장감시규정 및 제40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감시위원장”이라 한다)
 2. 삭제 <2008. 2. 29.>
 3.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4. 협회가 추천하는 2인
- ③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시장감시업무의 절차를 살펴보면,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통하여
거래소시장 및 ATS의 시장감시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시장감시 수행 결과, 회원의 거래소 규정 위반 사안은 자체 징계를
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안은 금융당국에 통보하며, 금융
당국에 통보된 사항은 금융당국의 조사를 거쳐 행정조치 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 및 수사·기소절차를 거쳐 처벌이 이루어짐.

[그림2] 시장감시업무 절차



(자료: 금융위원회)

□ 이와 같이 거래소가 거래소와 ATS의 시장감시업무를 통합하여 수행
하게 될 경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감시체계를
일원화하여 감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에 시장감시업무를
수행해 온 거래소의 경험과 운영경험을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
됨.⁶⁾

□ 그런데, 이러한 거래소 중심의 시장감시 수행 구조는 시장운영기능을 수행하는 거래소가 시장감시기능까지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으며, 경쟁시장인 ATS에 대한 시장감시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특히, 2025년 3월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함에 따라 복수 거래시장 간 경쟁 환경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시장감시업무 수행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개정안은 시장감시업무를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감시법인 설립, 인가, 업무 및 조직,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감시법인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업무를 영위하며, 회원은 거래소와 ATS로 하는 한편, 3인 이상 독립이사가 이사회를 구성함.

○ 그 밖에 시장감시법인의 업무, 시장감시규정, 심리 및 감리, 분쟁자율조정,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거래소에 적용되고 있는 관

6) 연계감시와 청산 및 파생상품시장 결제업무가 지정거래소(한국거래소)에 집중되는 경우, ① 다수의 거래소 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사이를 연계하여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가 가능하고, ② 청산 및 결제업무의 집중으로 인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로 인하여 청산 및 결제업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수 있으며, ③ 현재 시장감시와 청산 및 파생상품시장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거래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출처: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2. 6. 25. 정부제출) 검토보고서, 2012. 9.)

런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음.

[표1] 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총칙	설립(안 §414의6)	○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 (안 §414의6·§414의6)	○ 금융위원회의 인가 - 인력·전산설비 등 물적설비, 정관·규정 적정성, 임원 적격성,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 등 ○ 인가 이후 인가요건 유지의무
업무 및 조직 등	업무(안 §414의7)	○ 시장감시, 이상거래 심리, 거래참가자등 감리 ○ 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 간 연계감시 ○ 위 두 업무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요구 결정 ○ 불공정거래 예방활동 ○ 분쟁자율조정 ○ 시장감시규정·분쟁조정규정 제정·변경 등 ○ 법령에 따른 시장감시법인 운영 업무 ○ 기타 부수업무
	회원(안 §414의8)	○ 거래소, ATS
	조직 (안 §414의10)	○ 임원: 이사장, 감사, 이사 - 임기는 3년. 다만, 정관에 따른 연임 가능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설치 - 독립이사 3인 이상, 과반 구성 의무 ○ 금융위원회의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근거 ○ 임원의 「금융사지배구조법」 요건 준용
	시장감시규정(안 §414의11)	○ 시장감시 업무가 포함된 시장감시규정 제정
	심리·감리(안 §414의12)	○ 자료제출 요청 및 출석·진술 요구 ○ 거래참가자등의 자격정지, 거래제한 가능
	분쟁자율조정(안 §414의13)	○ 거래 관련 분쟁 자율조정 기능
감독 등	조치(안 §414의16)	○ 인가 취소, 업무정지, 기관·임직원 제재 가능
	규정 승인(안 §414의17)	○ 시장감시규정 및 분쟁조정규정 등에 대한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 이러한 개정안은 시장감시업무를 독립된 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 기능과 시장감시 기능 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하고, 거래소와 ATS 간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이상거래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기업의 특성, 공시 및 거래현황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시장운영기능과 시장감시기능을 엄격히 분리할 경우 두 기능 간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경우 거래소와 ATS 등에 대한 시장감시업무를 분산하여 수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며, 시장감시기능을 보유하지 않는 거래소의 사례는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됨.

[표2] 해외 주요국 시장감시업무 수행주체

감시대상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독일	홍콩
거래소	거래소 자회사(NYSE-R)	거래소 내 시장감시위 원회	거래소 자회사(JPX-R)	거래소 자체 수행		
ATS	독립 자율규제기구(SRO)		ATS 자체수행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그동안 거래소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별도 법인의 신설을 통해 수행할 경우 시장감시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국내 투자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시장감시법인의 이사회의 구성 규모, 조직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별도 법인의 시장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비용 및 기관 운영비 등을 회원인 거래소와 ATS의 분담금 등으로 충당할 경우 해당 비용이 투자자의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은 시장감시기능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취지와 함께 감시체계 운영의 효율성,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부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향후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를 통한 업무 수행이 효과적이라는 점,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도 자체 (내부조직 또는 100% 자회사) 시장감시 기능이 없는 해외거래소를 찾기 어렵다는 점, 자본시장 선진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조직적인 구조개편 논의에 따라 골든 타임을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거래소는 동일 종목이 거래소와 ATS에서 동시에 거래되고 동일한 시장감시 기준이 적용되므로, 시장감시 기능을 한국거래소 인프라로 수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시장감시법인을 별도 설립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과 전문인력의 필요성, 기존 거래수수료에 포함되었던 시장감시수수료가 별도 부과됨에 따른 투자자 거래비용 부담 증가, 거래소, ATS와 시장감시법인 간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실시간 전달할 수 있는 보안을 갖춘 전산망 구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거래소 및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 삭제

□ 개정안은 거래소 및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7조 및 제378조제1항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생략)	제303조(결제업무규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결제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이행·불이행 결과의 <u>거래소</u> 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항(전자등록기관의 결제업무규정에 한정한다)	5. ----- ----- <u>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u> ----- -----
6. (생략)	6. (현행과 같음)
제323조의10(업무) ① (생략)	제323조의10(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u>거래소</u>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하는 경우	2.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u> ----- -----
제326조(업무) ① 증권금융업무는 다음	제326조(업무) ① -----

현행	개정안
각 호와 같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거래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 다) 또는 청산대상거래에 필요한 자금 또는 증권을 제378조제1항에 따른 청산기관인 거래소 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하여 대여하는 업무	2. ----- ----- -----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② ③ (생략)	② ③ (현행과 같음)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제377조(업무) ① ----- ----- -----제4호----- -----결제기관-----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삭제>
4. ~ 13. (생략)	4. ~ 13. (생략)
② 거래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② ----- -----.

현행	개정안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323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 는 경우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 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 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 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 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 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 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② (생략)	-----. 1. (현행과 같음) <삭제> 제378조(결제기관)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323조의37)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⁸⁾을 영위하려는 자는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것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같은 법 제377조⁹⁾에서는 거래소의 업무로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ATS 거래 포함)에 따른 청산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378조¹⁰⁾에서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ATS 거래 포함)에 따른 청산업무에 대하여는 인가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청산기관으로서 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규정을 두면서,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매매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는 지정거래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장내시장에서의 대규모·실시간 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는 지정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별도의 인가를 받은 청산업자는 장외시장(장외파생·비상장시장 등)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㉔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이란 금융투자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청산대상업자”라 한다)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산대상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이하 “청산대상거래”라 한다)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3.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에 관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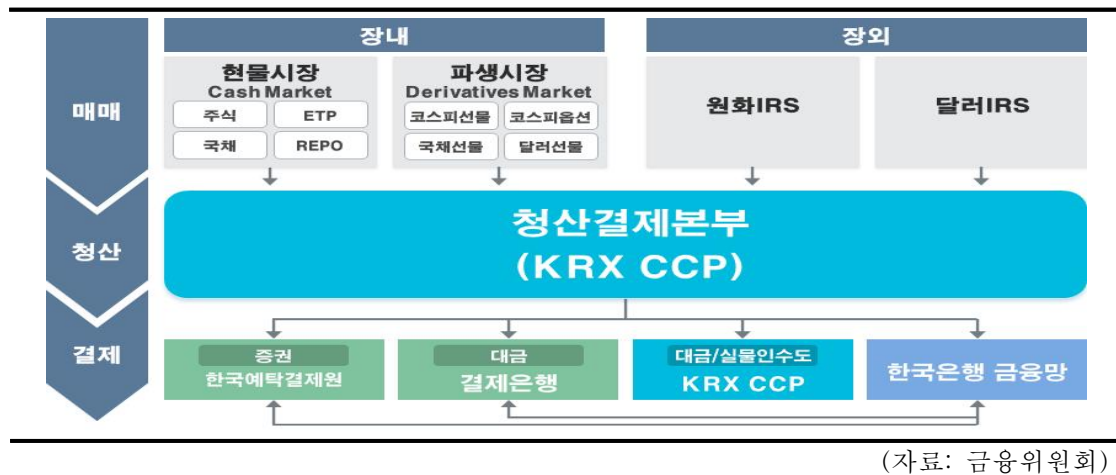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①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에 따른 매매확인, 채무인수, 차감, 결제증권·결제품목·결제금액의 확정, 결제이행보증, 결제불이행에 따른 처리 및 결제지시업무는 제323조의2 및 제323조의3에도 불구하고 청산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청산업무를 수행할 것을 예정한 취지로 이해됨.

- 이에 한국거래소는 법인 내에 청산결제본부를 두어 장내시장에 대한 청산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2013년 9월에는 장외파생상품청산업에 대한 인가를 별도로 취득하여 2014년부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음.

[그림3] 한국거래소 매매·청산·결제업무 체계



- 그런데, ATS가 출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거래소가 시장 감시업무를 비롯하여 청산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정안은 거래소와 지정거래소의 청산업무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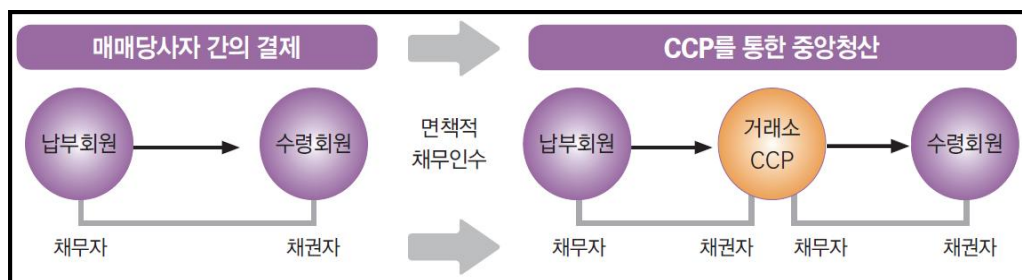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장내시장에서의 대규모·실시간 거래에 대한 청산업무를 거래소 또는 지정거래소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취지를 감안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대규모·실시간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대규모의 자원 및 자본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다자간 차감(상계)을 통하여 결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수 참가자 및 제반 시스템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 청산체계는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인 것으로 보임.

[그림4] 중앙청산소로서 청산기관의 규모의 경제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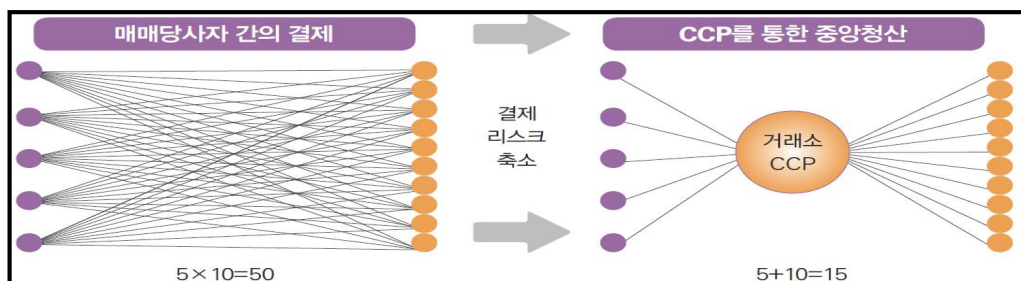
- 중앙청산소로서 회원간의 채권·채무 인수를 통해 결제이행을 보증하고 결제불이행 위험을 부담하기 위한 대규모 자원·자본 필요

[매매당사자간 결제 vs CCP 중앙청산]



- 다자간 차감(상계)을 통해 결제증권·금액을 축소하여 결제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참가자(회원) 및 제반 시스템 필요

[다자간 차감에 따른 결제리스크 축소]



- 국제기준(PFMI*)에 따른 회원관리, 증거금·공동기금 적립 등 체계적 리스크 관리와 결제이행 모니터링을 위한 대규모 조직·인력 필요
- *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영국·일본·홍콩 등의 경우에는 장내시장의 청산업무는 거래소가 직접(내부조직 또는 100% 자회사)가 수행 중이며, 일부 복수의 정규 거래소가 있는 국가(미국, 인도 등)에서는 별도의 독립 청산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3] 해외 주요국 청산업무 수행주체

설립형태	합계	국가	비고
거래소	8개사	한국, 대만, CME(시카고거래소), 브라질 등	직접 운영
	34개사	영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자회사로 운영
별도회사	9개사	미국, 인도 등	-

(자료: 금융위원회)

□ 참고로,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실시간 매매거래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청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춘 거래소가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 자본시장 선진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조직적인 구조개편 논의에 따라 골든 타임을 실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거래소는 청산업무의 경우 ATS와의 이해 충돌 우려가 적고, 업무 특성상 조직 분리의 실익이 크지 않아 현행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11